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56288(본소), 2016나56295(반소) 판결 [손해배상
청구 · 구상금]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56288(본소), 2016나5629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가단344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경기도

변론 종결 2017. 3. 17.

판결 선고 2017. 4. 2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가단3446(본소), 2016가단501558(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1,396,85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409,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가.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5,987,2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8행의 "피고는 2008. 8. 1."을 "원고는 2008. 8.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상무

판사김태진

판사민경현